

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-13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

제안자 : 동 두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시 보류하였던 본청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조정하고 이전·신설하는 보건소 및 아름다운문화센터의 명칭·위치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업무조정 내용

-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를 보건소 업무로 조정(안 제3조제2항제4호)

나. 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(안 별표 1)

- 동두천시 생연동 643번지 → 동두천시 생연동 714-9번지

다. 사업소의 명칭·위치 변경(안 별표 2)

- 아름다운문화센터(동두천시 지행동 722-1번지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중 나목을 삭제한다.

제6조 단서를 삭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총 무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김 정 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시정담당 홍 찬 의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정 영 만 860-2121, 2122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(생략) ②실·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 4. 사회복지과 가. (생략) <u>나. 식품·공중위생업소 인·허가 및 단속</u> 다. ~ 바. (생략) 5. ~ 16. (생략)</p> <p>제6조(업무) 보건소는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 <u>다만,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제외한다.</u>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사회복지과 가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다. ~ 바.(현행과 같음) 5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업무) ----- ----- <u><단서 삭제></u></p>

[별표 1]

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4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동두천시 보건소	동두천시 생연동 714-9번지	동두천시 일원

[별표 2]

사업소의 명칭·위치(제7조 관련)

명 칭	위 치
환 경 사 업 소	동두천시 상봉암동 175번지
시 설 사 업 소	동두천시 상패동 122번지
아름다운문화센터	동두천시 지행동 722-1번지